제정 2018. 4. 25 조례 제2360호 일부개정 2019. 6. 25 조례 제2482호 일부개정 2020. 7. 31 조례 제266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,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광명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
- 1. "소속공무원"이란 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 광명시 및 광명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
- 2. "후생복지제도"란 소속공무원의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 도,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.
- 3. "맞춤형 복지제도"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 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4. "근로지원인"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보조공학기기·장비"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,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하다.

제3조(적용 범위)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

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육아·질병·가사·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
- 2.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
- ③ 시장은 광명시 본청·소속·하부 행정기관, 광명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1. 청원경찰
- 2. 공무직 근로자

[제목개정 2020. 7. 31]

- 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·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,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,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.
 - 1. 구내식당, 매점, 휴게실, 직장어린이집
 - 2.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, 체력단력실
 - 3.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
 -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6. 25, 2020. 7. 31〉
 - 1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
 - 2. 후생복지시설(구내식당, 체력단련실, 휴게실 등) 운영 지원
 - 3.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지원

- 4.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
- 5. 장기재직 공무원 및 명예(정년)퇴직 공무원 국내 · 외 연수
- 6.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체험 및 국외 배낭여행
- 7. 출산물품 지원 등 직원 출산장려 지원
- 7의2.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
- 7의3.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
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
- 제7조(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다.
 - 1.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8조(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6. 25, 2020. 7. 31〉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한다. 〈개정 2020, 7, 31〉
 - 1. 소속공무원(2명 이내)
 - 2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(1명)
 - 3. 광명시의회 의원(1명)
 - 4. 지역경제,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(3명 이내)
 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.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

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- 제9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-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제11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,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,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등에 대해서는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〈개정 2020. 7. 31〉

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

- 제12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)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)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 - 1. 기본항목: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하는 항목
 - 2. 자율항목: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하는 항목
 -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(이하 "선택안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.
- 제14조(기본항목) ① 기본항목은 필수 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.
 - ② 필수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·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.

- ③ 선택 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.
- 제15조(자율항목)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·자기계발·여가활용·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.
- 제16조(복지점수의 사용한도)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·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(이하 "복지점수"라 한다)를 두며,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.
 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,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17조(복지점수의 부여기준)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,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 -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 - 1. 기본 복지점수: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
 - 2. 변동 복지점수: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
 - ③ 기본 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 - ④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,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제18조(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)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.
 -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 -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·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. <개정 2019.

- 6. 25, 2020. 7. 31>
- ④ 전출·면직·해임·파면·휴직·파견(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⑤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제19조(회계처리의 특례)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 확인, 증명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제20조(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·운영)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

- 제21조(근로지원인의 배정·보조공학기기·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) ① 시 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 할 수 있다.〈개정 2019. 6. 25〉
 - 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: 보조 공학기기·장비(이하 "보조공학기기 등" 이라 한다) 지급
 - 2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: 근로지원인 배정
 -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,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제22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제77조제3항에 따라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

단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 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
- 2.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
- 3.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
- 4.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〈개정 2019. 6. 25〉
- 제23조(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9. 6. 25 조례 제2482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. 7. 31 조례 제2660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